



'95 UN세계여성대회와 NGO역할

-아·태지역 NGO회의 보고회-

일시: 1993년 11월 30일(화요일) 오후2시~4시
장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강당



아·태지역 NGO회의 한국참가단

’95 UN세계여성대회와 NGO역할

-아·태지역 NGO회의 보고회-

순 서

사회 : 신 낙 균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제1부

- ◇ 경과보고 ----- 김 금 래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 아·태지역 NGO회의의 성격과 의미 ----- 박 영 혜
(전문직업여성클럽한국연맹 회장)
◇ 프로그램보고 ----- 이 미 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제2부

- ◇ 분야별 보고 및 행동계획

- 노동 ----- 이 영 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농업 ----- 박 남식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부회장)
· 문화 및 교육 ----- 김 성 은
(한국여성사회교육회 부회장)
· 정치 ----- 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 경제 ----- 홍연숙
(전문직업여성클럽 세계연맹 부회장)
· 성폭력 ----- 정영애
(한국여성의 전화 상담부장)
· 가족 ----- 박종희
(대한아미니회 서울시연합회 회장)
· 환경 ----- 구훈모
(원불교여성봉공회 이사)
· 건강
· 과학과 기술

제3부

- ◇ '95 UN 세계여성대회를 위한 NGO의 과제 ----- 신 해 수
(한국여성의 전화 부대표)
◇ 아·태지역 NGO 회의 총평 ----- 김현자
(한국여성정치연맹 부회장)

부록

제1부

경과보고

김 금 래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93. 7. 14-15

아시아, 태평양지역 민간단체실무팀(NGO Regional Working Group for Asia/Pacific) 주관으로 제4차 북경 세계여성대회를 위한 준비모임이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개최됨.

'93. 7. 20 NGO준비모임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소롭티미스트, YWCA,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사회교육회, 전문직업여성클럽한국연맹, 한국통일여성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 9개 단체 대표 참석하여 **북경세계여성대회를 위한 한국여성 NGO모임 결성**.

NGO조직 구상

그후 수차례 걸쳐 논의를 거듭한 결과 「마닐라 아·태지역 NGO회의」 한국실무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국내의 모든 여성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70여개 여성단체에게 초청장을 발송하였다.

'93. 9. 15

1차 회의-마닐라 아·태지역 NGO회의 설명회 개최

장소: 한국여성개발원

참석: 23개 단체가 참석하여 한국여성개발원의 정순영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아·태지역 NGO회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회의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김금래 사무총장), 한국여성단체연합(이미경 공동대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신낙균 회장), 전문직업여성클럽한국연맹(박영혜 회장), 한국여성정치연구소(손봉숙 소장)를 실무위원으로 선임하였다.

'93. 10. 6

2차 회의-각분야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분야별로 단체를 나눠 보고서를 작성하고 11월 2일 발표키로 하다.

장소: 한국여성개발원

'93. 11. 2

3차 회의-마닐라 회의 참가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한 의견 교환 및 분야별로 준비한 활동내용에 대한 발표를 하다.

장소: 한국여성개발원

'93. 11. 16-20

한국에서 15개 단체 33명이 마닐라 아·태지역 NGO회의에 참석하다.

아 · 태지역 NGO회의의 성격과 의미

박 영 혜

전문직업여성클럽한국연맹 회장

지난 11월 16일에서 20일까지 5일간 마닐라에서 열린 아 · 태지역 NGO심포지움은 1985년 나이로비 세계여성대회 이후 제4차 세계여성대회(북경, 1995) 준비를 위한 아 · 태지역의 첫 지역준비회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회의의 소집은 UN 아 · 태지역 경제사회이사회(ESCAP)와 대통령직속의 필리핀 여성역할위원회(NCFRW)와 공동명의이며 이에 아 · 태지역 NGO실무위원회의 협력이 부가된 형태이다.

회의의 목적과 의미로 말하자면,

1. 유엔 여성 10년 후미에 나이로비에서 열린 유엔여성대회에서 채택된 미래전략(Forward-Looking Strategies for the Advancement of Women)의 이행방향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
2. Platform of Action(북경에서 채택할 세계여성행동계획)이 기존의 유엔 문서보다 정확하고 사전협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새로운 정책 문서가 될 수 있도록 이 계획을 위한 입력자료를 추출하는 것.
3. 지역준비과정을 통하여 지역현실과 권고사항을 확실히 밝히는 것.
4. Platform of Action의 이행을 위하여 정부기관의 협조를 미리 준비시키는 것.

그러면 이번 NGO심포지움의 주된 목적의 하나는 1994년 6월 자카르타에서 열리게 되어 있는 공식적인 아 · 태지역 준비회의에 NGO가 준비할 수 있는 입력사항을 걸러내 보자는 것이며, 또한 자카르타회의로부터 마련된 입력사항이 북경에서 채택될 Platform of Action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순서로 진행된 것이다.

한편, 이번 NGO 심포지움이 아 · 태에 국한된 지역적 차원을 넘어서 북경대회준비 과정의 NGO 준비행사의 일환으로 간주되어야 함은 물론 북경대회 준비과정은 1995년에 있을 공식적인 제4차 유엔 세계여성대회와 「NGO 포럼」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NGO들은 어느 한 쪽 또는 공식, 비공식의 두 대회에 다 관여할 수 있으며 이번 심포지움이 북경으로 이어지는 여러 길을 이해시키고 또 도전할 기회를 열어주는 계기가 되며, NGO의 효과적인 참여 전략 수립을 유도할 뿐 아니라 우선적 이슈 및 권고사항의 추출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회의의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 NGO Working Group의 Noeleen Heyzer에 의하면 NGO 심포지움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나이로비 전략이행의 점검.

둘째, 아 · 태지역 개발경험의 평가를 여성의 시각으로 하고 90년도의 여성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을 P.A.에 반영시킬 것.

세째,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정부와의 협력 체제구축을 목적으로 한 NGO의 전략 논의. 예를들어, 국가위원회에 NGO를 포함시키는 점은 이에 유엔이 각국정부에게 통지 · 권고한 바 있으며, 지역 · 국제적 차원에서 NGO들은 정부간 공식회의에 정부대표의 일부로서 참여하도록 권고 받고 있다.

네째, 아 · 태지역 NGO 행동계획을 세우는 것.

다섯째, NGO 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여성운동의 평가 및 21세기를 향한 움직임의 주된 도전과 제약, 예측 등이다.

프로그램보고

여성발전을 위한 아·태지역 NGO 심포지움 일정 및 개관

이 미 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일시: 1993. 11. 16~20
- 장소: 필리핀 마닐라, 하얏트 리전시 호텔
- 주최: United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ESCAP)
- 공동주최: National Commission on the Role of Piliphino Women(NCRFW)
- 협력단체: Asian and Pacific NGO Working Group
- 자료1: NGO Working Group List.
- 참가국: 아·태지역 33개국 600명
 비아·태지역(미국, 러시아, 필란드 등) 22명
 이 중 한국 참가자 33명
- 자료2: 참가국과 참가자 수

1. 프로그램 일정

11월 16일

제1의제: 개회식

*개회사:

Mr. Rafeeuddin Ahmed (ESCAP)
Sunator Leticia Ramos Shahani (NCRFW)
Mr. Kevin Mc Grath(UNDP)
Thanpuying Sumalee Chartikavanij (NGO Working Group)

*메세지 :

Ms Gertrude Mongella(1995년 4차 세계여성대회 사무총장)

*기조발제:

Khunying Supatra Masdit(1995년 NGO포럼 소집자)

제2의제: 나이로비 전략의 수행에 대한 개관

*나이로비 전략에 대한 개관

Dr. Swarna Jayaweera(Sri Lanka)

Kaye Loder (Australia)

*발전경험에 대한 비판: 대안적 발전틀과 전략

동남아시아: Noeleen Heyzer(Malaysia)

동아시아: Matsui Yayori(Japan)

태평양: Caire Slatter(Fiji)
남아시아: Hameeda Hossein (Bangladesh)

제3의제: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NGO와 정부와의 협력 전략

*연대의 밤:

모든 참가자들은 다음 날부터 참가하는 Workshop 주제를 표시하여 사무국에 제출

11월 17일

의제2, 3(계속)

오전 Workshop A

오후 Workshop B

11월 18일

의제 2, 3(계속)

오전 Workshop C

오후 Workshop D

*자료3: Worshop ABCD의 Item

11월 19일

의제 2, 3(계속)

오전 12개 주제 웍샵에 대한 전체보고

제4의제:

아·태지역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행동 계획

각 웍샵 그룹 발표, 행동전략 발표

오후 행동전략에 대한 Sub Regional Workshop

11월 20일

의제 4(계속)

Sub Regional Workshop 보고

아·태지역 NGO행동전략 발표와 채택

제5의제: 폐회식

Senator Leticia Ramos Shahani(NCRFW)

Thanpuying Sumalee Chartikavanij(NGO Working Group)

특별보고1.

동아시아 지역 웍샵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등이 자신들의 고유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발전된 위치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언어의 장애 때문에 회의에 충분히 그 경험이 전달되지 못하였고, 회의에 통합되지 못했음을 평가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첫째, 동아시아 여성포럼을 1994년 6월 경에 가져서 베이징 대회를 준비하기로 하였다. 이 대회 준비에 대해서는 각 나라들이 일단 국내에 돌아가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고, 일단 각 나라 별로 연락 담당자(Contact Person)을 두기로 하였다. 한국측 연락 담당자는 손봉숙박사로 정했다. 또한 다음 대회에 이들의 언어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제 기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2. 아·태지역 회의 준비 Working Group에 한국측에서는 참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사전 정보가 약했고, 회의의 사회자, 발제자 등에 참가가 저조하였다. 이 점은 인도, 필리핀, 말레이지아등 소수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마찬가지 입장이어서 Working Group의 개방화가 강력하게 요구되어 8개 지역에서 1인과 18개 주제 별로 각 1인으로 구성하기로 제안되었다.

제2부

분야별 보고 및 행동계획

여성과 경제적 권리들

이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인간의 권리로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에 대한 최소의 인식은 이러한 권리들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의 운동에 반영된다. 국제인권기구들에서 그러한 인식은 민중들의 일반적인 열망의 하나의 형태이다. 그러나 여성이 처한 현실을 볼 때 경제적 권리들은 권위주의적 구조와 제도에 의해 주지, 강화되는 발전전략과 경제정책에 의해 계속 부인되어 왔다.

새로운 형태의 생산방식과자본의 이동은 여성의 기본적인 경제적 권리들 상당 부분 위협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더욱 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권리들을 침해해 왔다. 개발도상국은 막대한 부채의 누적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경제 정책의 결정권을 국제금융기관에 빼앗기고 있으며 민중의 이익과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

국제금융기구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SAP는 제3세계경제를 수출중심의 경제성장, 민영화, 규제완화, 민관의 여성화로 이끌었다. 이것은 더 큰 부채, 대량고용, 궁핍화로 기착되었다. 더 나아가 비인간적이고 착취적인 조건에서 대량의 이민노동의 유입을 가져왔다.

더 나아가 자원의 사용과 관리, 접근에 있어 성적인 관점의 결핍은 불균형적인 발전을 야기시켰다. 여성의 무한한 능력과 소유권으로부터의 배제는 여성의 종속과 특수한 인권침해의 원인이다. 차별과 착취, 여성의 활동에 대한 종교적, 문화적 장애는 공식적인 부문으로부터 여성의 배제했다. 동시에 소득에 대한 요구는 착취에 대한 어떤 보호장치없이 비공식적인 부문에서의 경제적 활동을 강요케 했다. 성적 분할은 두 가지 측면에서 종속을 가져왔다.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부족과 노동운동에 있어서 성적 관념의 부족은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여성들의 투쟁의 과정을 저하시켰다. 그러므로 여성의 해방, 역량, 자기결정을 위해 워크샵에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여성의 경제적 권리(땅, 집, 일반적인 소유자원)의 효율적인 신장과 완전한 인정
2. 가난한 나라에 대한 완전한 부채탕감 또는 50%탕감을 위한 부채상환액의 재조정
3. SAP제재로부터 다자간 연조체제로의 이행
4. 발전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군비 감축
5. 여성과 아동들을 비인간화하고 착취하는 수출중심의 발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다.
6. 여성과 가난한 자들에게 생태학적으로 안전하고 힘을 주는 생산을 위한 사업과 농업의 재조정
7. 여성의 경제에 대한 기여도의 가족을 지원하는 여성을 재인식하는 통계기초의 재개념화
8. 사업장에서 여성을 주변화시키고, 저임금직종과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차별적 현실에 대한 인식
9.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국가 및 민간의 노력, 이러한 책임성의 지불이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도록 용이하게 하는 법제화
10. 현장에서의 성희롱이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의 침해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것의 다양한 형태들이 인식되어야 하고, 적절한 법적인 방도들이 침해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채택되어야 한다.
11. 노조, 비정부단체, 여성단체를 포함한 조직체들(노동블러)의 강한 제휴의 창출, 여성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12. 계약노동자들에 대한 권리의 확대와 법적 의무에 대한 고용주의 법적 책임성에 대한 언칙들의 수락
13. 다국적기업에 의한 노동의 착취를 막기 위한 그리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해를 지켜내기 위한 UN의 효율적인 개입
14. 여성의 2차적인 사회경제적 역할이 아닌,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지위를 인식하도록, 특히 CEDAW같은 국제

기구의 언어에 대한 검토

15. 모든 I. L. O. 협약과 국제적 인권조약에 대한 모든 국가의 비준
16. 각국 노동단체들로 하여금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법률 제정에 주력하도록 환기시킬 것

산업노동자들

1. SAP와 기술발전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대체되는 여성은 새로운 고용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2. 노조는 모든 수준에서 의사결정에 여성의 평등한 참여와 성의 등을 보장해야 한다.
3. I. L. O. 는 여성노동자들의 특별한 이슈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다른 I. L. O. 등에서 여성의 멤버쉽을 확보해야 한다.
4. 정부는 수출자유지역에서 조차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해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5. 직업병의 이슈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효율적인 법적 방법
6. 여성노동자의 상승을 위한 적절한 직업훈련의 개발
7. 여성노동자의 조직결성의 권리가 완전히 인식되어야 한다.
8. 노조 또는 독립적인 여성노동자조직체의 결성을 통한 여성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민 노동자들

1. 공정한 임금으로 고용을 제공하도록 국가에 의해 승인이 확실하게 된 구조적 경제 변화
2. 이민노동자들에 대한 모든 국가간의 협정의 비준과 영향력 있는 국가의 입법에 따른 발전
3. 양국의 이민노동자들의 권리의 보증에 따라 수출하는 국가와 수입하는 국가간의 쌍무합의와 사회적 안전 합의
4. 착취와 악용을 예방하기 위해 수입국가에서의 이민노동자들의 권리를 법률화 한다
5. 수입국에서의 합법적인 제도는 이민노동자들의 개인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합법적 재판은 여성에 반대하는 폭력의 제물을 요구하기 위해서 더불어 법적 조치, 행위등의 다른 형태가 생겨나게 된다.
6. 모집방법을 규제하고 조절하기 위해 효과적인 메카니즘이 만들어져야 한다.
7. 대사관직원들과 고급관리들은 이민노동자문제, 특히 여성이민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8. 경제적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다국적 기업의 활동을 다국적기업에 유치하고 있는 나라의 민중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규제되어야 한다.
9. 이민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NGO의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10. 출국전 교육프로그램을 이민노동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처할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짜여져야 한다.

농장/ 농업

1. 농장부문의 임시노동을 통제하기 위해 효율적인 법제화가 되여야 하고, 고용주는 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2. 정부는 최저생계비와 유사한 노동뿐 아니라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보장한다.
3. 건강관리, 육아, 직업병에 대한 보상, 父의 benifits를 포함하여 여성과 여타 노동자들의 사회적 안전을 제공
4. 직업병, 특히 여성의 재생산적 건강에 대한 기재의 창출
5. 직업병과 안전을 위한 법제화를 만들고 시행하는 것
6. 노동운동내 모든 수준에서 의사결정에 여성의 효율적인 참여를 보장
7.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대부의 확장과 다른 경제적 이해에 있어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의 해소

비공식부문

1. 가내부업, 가사노동, 자가고용을 포함한 비공식부문의 노동자를 포함하는 '노동'과 '노동자' 개념의 재규정화
2. 활동유형에 다른 노동자의 등록과 범주화

3. 계약직, 임시직, 비정기 또는 파트타임노동자들 등 전노동자에게 노동법 적용을 확대
4. 비공식부문의 노동자들의 노조와 같은 조직결성의 승인과 이 부문의 노동자에 대한 I. L. O. 조약을 87개 조항의 완전 적용
5. 여성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forum을 통한 실행과 적절한 이행기제
7. 계정적인 농업노동, 건축노동, 가내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비수기 동안의 고용기회의 창출
8. 특히, 집이 없는 도시의 가난한 여성에 대해 주거권에 대한 인식과, 여성의 주택소유를 보장하는 효율적인 정부의 주택정책

농업분과 과제작업 보고서

박 남식

전국 여성농민회총연합 부회장

추수를 바로 끌낸 농민들의 마음은 무척 다급하였다. 벼를 털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냉해가 심각하였다. 그위에 새 정부의 김대통령은 쌀과 기초식품은 절대 개방하지 않겠다고 철통같이 공약을 하였지만 마지막 농산물 개방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압력을 계속 받고 있어 쌀을 제외한 비교역적 기능의 기초식품 14 가지를 그대로 수입개방할 의사가 농민들의 눈에 그대로 비치기 때문이었다. 한국 (1989년 GATT-BOP(국제수지조항))을 출업 할 당시 농산물 수입자 유화율이 72%였지만 4년이 경과한 지금 93.9%이고 내년에는 95.5%가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 4년동안 국제 수지에서 내리 적자를 기록한 한국은 다시 GATT-BOP에 재가입해서 적자국혜택을 받아야 할 형편이다. 한국의 식량 자급률이 34%이고 쌀의 자급율이 97.5%이기 때문에 쌀을 제외하면 식량 자급률이 9%밖에 안된다. 쌀은 농업소득의 44%이고 한국농가의 84%가 쌀농사를 짓고 있다. 만약 쌀시장을 개방하면 농업기반이 그대로 파괴되고 농민들은 도시로 몰려 교통, 주택, 범죄, 실업, 환경문제등의 엄청난 도시문제가 야기된다. 이러한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이 농업을 지키는 예산보다 더 많이 소요되므로 국민적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비록 현재 미국쌀보다 3~4배 비싸지만 우리쌀을 먹고 지키는 것이 식량안보다 자주국방의 차원에서 온국민이 애국하는길이 된다. 통일을 대비하여 더욱 자주농업을 실현하여 남북통일국민이 식량걱정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11월 10일 전국 여성 농민집회가 서울복판에서 벌여졌다. 더이상 밀려날수 없는 벼랑위에선 농민들의 함성을 귀에 쟁쟁히 담고 한국 여성 농민운동을 대표해서 APNGO 심포지움의 농업분과에 참석하게 되어 더욱 더 성실하게 일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은 위의 농민, 농업현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시아태평양 농업국가의 여성 농민 활동가들이 60여명이상 참석하여, 이를동안 농업분과 과제작업에 열을 토하며 발제하고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해내었다. 여성농민의 일반적 개념정리, 활동 사례발표, 토지, GATT(일반무역협정)의 영향, 지원, 직업재해, 자주농업, 식량안보등으로 나누어 순서대로 열뛰게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경제발전의 형태나 정도에 따로 각국의 농업, 농민문제의 수준이나 감각은 크게 달랐다. 그러나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뿌리는 한결같았고 단지 그 침예한 경험을 조금 먼저 겪느냐 늦게 겪느냐의 시간문제였다. 해결방법도 한결같아 개별국가 차원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국가끼리 연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는 인식이었다. 농업을 살려야 모두가 산다라는 공동의 인식이 농업을 죽이려는 그 모든 대상에게는 강력히 공동대처해야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농업분과는 기층여성의 목소리가 훨씬 생생한것 같았다. 주요한 합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토지

- 1) 아시아 태평양에서 올바른 토지개혁을 제정시행하는 것이란 토지의 실제 경작자인 여성이 땅을 소유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 2) 정부는 일반토지소유권을 인식하고 존중, 보호하는 것이 실경작자에게 토지를 확보해 주고 토지를 경작하는 여성의 권리를 확실하게 해야한다.
- 3) 여성운동과 NGO가 여성농민이 토지권을 확보하고 접근하도록 변호하는 일이란 안전한 물과 에너지 같은 것이다.
- 4) 여성농민조직을 조직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것은 곧 토지에 대한 여성의 요구가 성취되는 것이다.
- 5) 국제 여성 토지 권리의 날을 선언해야 한다.

2. 자주적 농업과 유기농업

1) 정부는 국가정책으로 반드시 자주농업(살리는 농업)을 채택해야 한다.

유기농업으로 바꾸려는 농민에게 충분한 보조금을 제공해야 한다.(땅이 비옥토를 다시 찾을때까지), 또 유기농업 생산품을 위해 가격보조를 하고 시장판매와 보급을 위해 상설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2) 정부와 농촌개발기구는 유기농업실현을 위해 기초적 생산구조를 조사하고 자료화 하기 위한 기금을 제공해야 한다.

3) 정부는 자주적 농업과 유기농업을 촉진하고 실현키 위한 대중조직의 조직강화 시키고 보호해야 한다.

4) 여성운동과 NGO는 무농약, 무화학비료 농업을 위한 선전활동과 로비활동을 해야한다.

3. 종자와 생명공학

1) 종자는 다국적기업이 아닌 농민의 손에 있어야 한다.

2) 여태까지 자유롭게 사용되었고 자유롭게 변화시켜왔던 식물, 유전적자원, 종자는 북부와 국제 농업연구센타의 통제에서

3) UN은 생명공학 회사의 활동을 통제하는 법적기구 만들고 활동해야 한다.

4) 여성운동과 NGO는 생명공학의 나쁜영향에 대해 기충대중의 자각을 끌어올리고 기충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생명공학의 정보를 변역해야 한다.

5) 토착 동·식물의 유전자원을 서로 교환하고 그 교환이 용이하도록 연대틀을 만들어야 한다.

6) 생명공학을 조사하고 생산진행의 감시를 계속해야 한다.

4. 농약

1) 농약의 완전소멸을 위한 과도기로서 정부는 국가정책으로 농약사용 감소를 시행해야 한다.

2) 정부는 모든 위험한 농약 사용을 금지 해야한다.

3) 농약회사를 통제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농약광고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물

1) 정부는 수자원 관리사업의 권한을 분산하여 지역자치체의 손에 있도록 해야한다.

2) 정부는 재식수사업을 실시하고 지방자치가 주도권을 갖도록하며 수자원 보호 통제기구를 정착시키도록 해야한다.

3) 여성운동 NGO는 홍수조절, 댐, 관개시설 사업과 같은 새기술을 소개하고 감시해야 한다. 국제 연대틀을 가져야 한다.

6. GATT/자유무역

1) 소비자와 여성농민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교육해야 한다.

2) 세계시장, 무역조정협상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지역단위, 국가차원, 국제 조직단위로 압력을 넣어야 한다.

3) 정규적으로 최신의 정보와 종합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자유무역조절기구'를 설립할 것.

4) GATT에 의해 주도되는 자유무역구조를 반대하고 공정무역 개념을 촉구하는 선전을 벌이고 소비자, 농민, 노동자가 함께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5) '자유무역'의 오류를 폭로하고 자유무역사업의 영향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나누도록 여성농민의 교류를 지원한다.

7. 식품안전/식량안보

1) 식품안전의 목표는 지역사회내의 누구에게나 돌아가고, 이의 성취를 위해 토지, 종자, 자본, 기술과 같은 장비와 자원이 직접생산자의 손에 있음을 의미한다.

2) 정부는 국가 식량안보의 달성을 목표로 채택하고 식량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어떤 시도도 해서는 안된다.

3)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게 제1세계 국가의 잉여 식량을 덤핑해서는 안된다.

4) 국내소비식량생산을 위한 농민에게 충분한 보조금을 제공해야 한다.

5) 직접생산자에게 생산, 조사, 자료, 시장판매, 기술훈련등 강력한 지원을 해야한다.

6) 국가의제에 '식량안보'를 포함하도록 로비활동을 해야한다.

결의

1. UN은 모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구조조정을 멈추도록 IMF, WB에 압력을 넣여야 한다.
2. UN은 아시아·태평양에서 모든 부채의 원인이 된 과괴의 회복을 위해 변상기금의 창출을 시도해야 한다.
3. 아시아·태평양 나라의 부채 삭감을 위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
4. 여성운동, NGO는 특별히 여성농민에게 구조정의 영향, 대중의 인식을 끌어올리는 교육, 선전을 해야한다.
5. 여성운동, NGO는 구조조정 중지를 위해 국내적으로 지역적으로 국제적으로 정치활동을 연출해야 한다.

문화 및 교육

김 성 은

한국여성사회교육회 부회장

20개국에서는 70명의 여성들이 4개의 주제로 나누어 토의.

미래를 위한 행동 계획—미시적, 거시적 새로운 방안의 주장을 위한 역할.

넓게 깔린 여러 부분의 Network가 강력한 감시자와 모니터 기능을 제공하며 또한 다가오는 십년동안 주창자의 역할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은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 특히 기초교육, 보건과 다른 사회분야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이런 분야를 자유화시키는 것이 증가되고 있는 나라들에서 더욱 중요한 일이다.

* NGO들과 여성단체들과 다른 단체들 간의 새로운 partnership은 잘 구성된 정책과 전략을 수행하는데 있어 명료하고 행동하던 새로운 협의사항과 행동프로그램의 선봉이 될 수 있어야만 한다.

* 미시적인 수준에서 거시적인 수준으로의 이동은 역할학의 가속화 노력과 주류세력 속에서의 보다 효과적인 과제 수행에 미래의 NGO의 Agenda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분석과 비판 연합된 강한 로비들은 여러 전략 중의 한 차원 이어야 한다.

* 지방, 국가 또는 지역적인 수준의 가장 작은 공동의 Agenda를 위해 행동 계획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다음은 포괄적인 행동계획이다.

1. NGOs, 국가, UN과 자원을 기증하는 기관들을 포함하는 특별한 그룹에 의한 5개년 계획 개발.

2. 민중대표, NGOs의 국가들로 이루어진 모니터 평가단의 확립.

3. 여러 차원에서의 성의식 고취(Gender Sensitization) 프로그램의 수행.

· 정책 입안자 - 국가, 자원기증자, NGOs

· 인사개발

· 지역 공동체와 민중

이런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것들은 도구화 된다.

· 욕구 분석과 자원의 동원

· 훈련시키는 사람의 정체성

· 자료준비와 만들기

· 훈련시키는 사람의 훈련

· 프로그램 수행, 모니터링과 평가

4. 교육에 관한 거시경제적 사회적 정책의 영향 평가 이를 위해서 다음의 것들이 요구된다.

· 지역 공동체와 연구자들이 같이하는 참여 연구법

· 연구비의 보고와 자원—UNICEF, UNDP 등

5. 교과과정과 성의식화의 중재

· 1994년 말까지 전문가의 의견이나 자료조사

- 현실적/비현실적 교육제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준비
- 훈련기관들이나 재직훈련프로그램(현실적, 비현실적 교육 모두)에 성의식화 모형 소개. 교사들에게 특별히 촉점을 맞추어서
- 이 부분에 대해 지역간의 경험을 교환 장려

이미 몇개의 프로그램은 진행중이다. 지역이나 국가의 필요의 정도에 맞게 확장되어야 한다.

- 프로가와 모니터링 - UNESCO/UNDP의 재정보조.

6. 다양하고 비전통적 직업훈련과 고용에 소녀, 여성들의 참여에 대한 태도 변화 촉구.

- 카운셀링
- 원형과 역할모델의 준비
- 자료개발
- ILO의 자금 지원

여성의 정치력 강화

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본 워크샵에서는 여성의 정치적 권한을 증진시키는 일은 몇몇 여성들이 기존의 정치구조내에서 자리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비록 몇몇 여성정치인이 있다고 해도 이들이 모든 국가기구들-즉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비롯하여 군이나 경찰, 그리고 가족에 이르기까지-을 통하여 표출되는 권력관계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이나 미디어, 종교와 같이 이데올로기적인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기관들의 경우 몇몇 여성정치인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란 거의 미미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아·태지역 여러나라에서 여성운동은 여성의 권리 확대시키는 중요한 과정인 동시에 정치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정치참여 워크샵은 개념적이고 경험적인 수준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반영하여 네가지 소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소주제는 1) 여성과 민주주의, 2) 여성과 법, 3) 여성운동, 특히 선거와 입법과정에 여성운동이 영향을 미친 사례, 4) 여성의 정치적 역량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나누어 토론이 진행되었다.

첫번째 주제인 「여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토론에서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정치와 권력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리고 이 지역 여성들이 이러한 개념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여기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자체를 재정의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우리가 서로 어떻게 연계되어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는 윤리의 문제로서, 모든 사람과 모든 계층에게 평등이 허용되는 보다 보편적인 가치체계를 전제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개인으로부터 출발하는 하나의 가치체계로서 우리 자신들이 이를 내재화해 가야 한다. 아울러 가족이나 지역공동체, 사회, 국가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표출하고 확산해 나가야 한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권력에 대한 개념 역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권력이란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라기 보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힘으로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이 정치적 권력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개개인의 여성의 권력을 획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모든 여성들이 권력을 확대해 나가는 집단적 권력증진의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모든 문제가 “여성문제”이기도 하므로 여성은 “여성지향적”이거나 “여성고유의” 영역으로 분리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여성주의적 시각에서는 모든 문제를 알려야 하고 어떤 부분도 다른 부분에 포함시키거나 주변화 되어서는 안된다는 논의가 있었다.

제2주제인 「여성과 법」 워크샵에서는 공식적인 법 체계와 법으로 간주되는 관습적 관행 모두를 다루었다. 공식적 법체계는 개선하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관행보다 다루기가 쉽다는 점에 대해 거의 모든 토론자들이 동의하였다. 모든 수준의 정책결정에 여성의 참여한다는 것은 여성의 시각을 모든 기구, 즉 사법기관에도 반영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특히 여성들이 법에 무지하여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이를 위한 여성들의 노력이 강조되었다.

보편성의 개념이 강조되었지만, 국제적 규범으로 인정되는 이러한 보편성은 여성의 인권증진을 보장하는데 있어

서 최선의 것일 수는 없다는데 공감하였다. 이러한 최소한의 보편성은 정의가 종종 억압의 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아·태지역에서는 특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의 모든 분야를 평등과 사회정의로 규율하고, 어떠한 집단의 권리도 다른 집단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을 확신시키는 보편적 시민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3주제인 「여성운동」 토론에서는 여성운동이 여성문제를 부각시키고, 국내정치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여성의 정치력을 증진시키며, 여성의 권익신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여권주의는 여성운동에 대안을 제시하여,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의 문제까지도 다루었다.

여성의 정치적 역량확대를 위한 전략에 관한 논의는 첫째, 여성들이 정치의 주류를 형성할 수 있도록 모든 정치적인 지위에 나아갈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하는 일이며, 둘째는, 모든 수준에서 여성의 정치참여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는 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식적인 정치무대의 전 분야에 여성들이 참여하고, 여성문제가 모든 수준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를 포함한 모든 정책결정직에 할당제를 두어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보받도록 견의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시에 여성의 정치참여를 요구하고 주장하는 일 이야말로 여성의 정치적 권리증진에 있어 필수적인 활동분야이다. 이러한 활동은 더욱 그 영역이 확대되고 정교화 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은 정치의 주도적 장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반면에, 주도적 장으로 인식되는 개념자체를 바꾸는 것은 보다 궁극적인 과제인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적 권리증진이야 말로 여성운동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부분이다.

여성의 권리증진은 점진적이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의 권리증진을 위한 전략들은 두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기존의 권력구조내에서 이루어지는 전략이며, 다른 하나는, 기존의 가부장적인 구조내에서 여성의 정치력증진을 위한 요구를 확산시켜 나가는 전략을 들 수 있다.

첫째, 정치구조내에서의 전략으로는:

- 1) 여성은 고위직에 내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여성정치인을 확대해 가기 위하여 여성운동단체나 다른 진보적 NGO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 2) 여성운동 단체나 집단은 정책결정과정에 있는 여성정치인을 모니터하고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일 뿐만 아니라, 남성정치인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3) 여성은 정치적으로 권리를 증진하기 원한다면, 이를 위해 노력하고 투쟁해야 한다.
- 4) 여성들은 지방과 중앙정부의 전 영역에서 적절히 대표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할당제의 실시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할당제의 실시가 여성을 명목상으로 대표를 시킨다거나 가부장적인 권력에 영합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이상의 요구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운동차원에서의 전략으로는:

- 5) 일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운동차원에서의 여성운동은 단순히 의식수준의 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성들로 하여금 지도자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 6) 거리에 나와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 7) 보다 광범위한 저항이 요구되는 특정문제에 있어서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연대활동도 요구된다.

경제분과 결과보고서

홍연숙

전문직업여성을 위한 세계연맹 부회장

1. 진행

여성과 경제(Economic Empowerment)분과는 크게 네개의 분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2일간에 걸쳐 오전, 오후에 각각 한가지씩 (4 sessions) 다루어졌는데, 먼저 (1) 개관(overview), (2) 해외이동여성(International migration), (3) 사례(case studies), (4) 정부와 NGO의 협력의 순서였다.

2. 요지

종합적으로 볼때에 전체 발표와 토론은 네가지로 집약되었다. 첫째, 제도 개선에 따른 각국의 여성경제상황의 효과. 둘째, 비조직사업체. 셋째, 기존 기업체. 넷째, 재정 및 신용문제 등으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제도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들(structural adjustment programmes, SAP)은 대체로 사회보장 혜택이 따르지 못하였다. 즉 위생, 교육분야가 주로 해당되는데 안전과 보호대책이 없고, 저소득층에 영향이 많은 것은 물론 특히 여성에게 타격이 가장 크다 하겠다. 대부분의 아·태지역의 여성들이 농업에 종사함으로서 SAP의 영향권에 들어있다. 이 지역의 여성들은 집에서 일하는(home-based sector) 가내공업자들이 많은데 점점 그 수자는 증가하고 있다.

군(軍) 기지주변에는 매춘(sex industry)도 성행하고 있으며, 이런 여러 여건이 가난한 여성들이 생산적 활동을 하는 데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2) 비조직 사업체(unorganized sector): 여성인 남성이건 조직이 없는 이들에게는 자료/정보(lack of data)의 부족이 문제다. 따라서 은행의 신용, 직업훈련 등의 혜택이 전무하다. 아·태지역의 동아시아 몇나라를 제외하고는 대개 이런 가내업자들의 총수입이 국가적 차원에서 볼때에 기존업체들의 총수입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은행은 후자를 더 후원하고 있다. 사채는 빈자들을 착취하기 일수고 그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

(3) 기존 기업체(organized sector): 노동여건이 열악하고, 동일노동에도 여성의 임금은 낮다. 탁아소는 없고, 노동법은 여성에게 불리하다. 사회보장 혜택은 적고 불황이 오면 이런 여성에게 제일 먼저 타격이 온다.

(4) 여성경제활동과 신용대출문제: 국제적, 국가적 은행기관은 가난한 비조직 업체 여성에게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생산품의 시장화를 위한 법적, 정책적 대책이 부재상태이고 여성 농부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3. 전략

- 훈련을 통하여, 남성영역으로 알던 비전통적 직종분야에로의 여성의 진출
- 들러리가 아닌 사업, 일 자체를 위한 취업
- 자선이나 봉사만이 아닌 직업, 즉 회원제이고 민주적 운영, 그리고 여업주일때에 경제권이 강해진다.
- 생태학이나 자연보호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보장제도 확립도 필수적이다.
- 직업훈련과 취업알선도 연관을 지어 시행한다.
- 시장전략은 NGO 자체들이 협조하고, 시장조사하여 제조품을 선정하고 생산에 들어가야 한다.
- 세계 박람회 등 모든 산업전시회에 참여해야 한다.
- 정부가 협력하면 국가적 이익이 됨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

4. 건의문

- 1) 여성의 경제에 기여하는 바 지대하므로, (a)여성노동현황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통계·처리하고, (b)여성의 노동을 재평가하며, (c)가내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법을 만들어 ILO에서 통과시키도록 한다.
- 2) 여성의 재정 및 자원통제에 관하여, (a)여성에게 신용 및 재정적 지원을 촉구한다. (b)원료취급에 있어 여성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하고, (c)여성에게 토지소유권 및 기타 재산권을 보장해 줄 것을 건의한다.
- 3) 여성의 현직장을 강화하고 새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a)탁아문제, 건강, 해산, 보험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b)최저생활 수준을 위한 경제활동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전통적으로 남성이 하던 직종에서도 여성의 할 수 있음을 알리며, 이 분야에 과감히 진출한다. (c)이동여성 문제와 풀뿌리여성지도자를 격려한다.
- 4) 여성의 경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책으로서, (a)여성문제는 정기적으로 그 프로그램과 정책을 점검하도록 한다. (b)국제적 이동여성의 권위를 보호하도록 출입국 해당 국가에게 촉구한다. (c)정부와 NGO사이에 대화의 길을 열고, 그 절차를 모색한다. (d)국가적으로 국제협약을 이행하도록 lobby를 한다(즉, CEDAW, FLLS, ILO Conventions).

5. 한국의 참가와 종평

한국측에서는 위 경제분과에 세명의 발표자가 있었다. 사례발표에서 김현자(YWCA, 여성정치연맹)의 “여성을 비전통적 직종에 훈련시키는 한국 YWCA (Training Women in Non Traditional Jobs by Korean YWCA)” 박영혜(BPW 한국연맹)의 “한국경험 및 전략(Experiences & Strategies for Women's Economic Empowerment in Korea)”가 있었다. 종합분반에서 홍연숙(BPW 세계연맹)의 “정부와 NGO의 협력(Go NGO's Partnership for Economic Empowerment)”이라는 발표도 있었다. 참가하고 발표하는 한국대표로서 느낀점은 (1) 아시아는 어느 지역보다 더빨리 변하고 있고, 특별히 경제면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중요함을 재삼 실감했으며, 모든 참가자들의 시각은 넓어졌으며, 한마디로 많은 것을 배웠다. (2) 경제분과에서 토론된 문제들은 대부분이 한국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들의 목소리가 커다고 느꼈으며, 앞으로 동아시아(EAST ASIA)만의 공동 FORUM이 바람직하다.

VIOLENCE AGAINST WOMEN

정영애

한국 여성의 전화 상담부장

WORKSHOP ON VIOLENCE AGAINST WOMEN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개인적인 생활이나 공공의 생활전역에 있어서 성(gender)에 근거한 것이다. 즉 가정이나, 직장, 지역사회를 포함한 국내상황이나 국제적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말한다. 성에 근거한 폭력은 여성에게 상처를 주며 굴욕감과 셋을수 없는 공포를 가져다 준다. 성폭력은 심리적인 학대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육체적, 성행위를 통해 위협을 하거나 영향을 끼칠수도 있다.

성폭력은 가정과 공공생활에 있어서의 성적 남용, 협박, 육체적폭력을 비롯하여 직장이나 학교같은 기관에서의 성적 희롱과 협박, 어쩔수없는 불편하고도 위협적인 상황에서의 강제적 매춘, 인신매매, 고문, 성적 노예 그리고 학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에 근거한 폭력은 아주 자주 전통적인 종교나 관습으로 정당화되는 傷害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것들의 특별한 예가 여성생식기 체손, 여성과 과부에 대한 의식, 지참금과 관련된 폭력이나 sati의식 등이 있다. 더우기 이러한 성에 근거한 폭력은 아내강간이나, 아내폭행, 살인과 같은 것까지도 정당화시키거나 너그럽게 보아 넘기는 傷害를 포함한다.

국가와 함께 가정도 성에 대한 확고한 정의를 통해 여성을 통제하는 것을 모색했다. 그것은 여성-그들의 육체, 영혼, 정신-을 항구적으로 통제하는 조직적인 형태로 보여져 왔다. 입법과 재판과정에 있어서 여성의 동등권의 위배 그리고 모든곳에서의 여성의 기본권에 대한 위배는 우리로 하여금 폭력에 대한 이해를 재고토록 요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번의 WORKSHOP은 성에 근거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불가피하게 사회와 문화전역에 불평등과 연결되어 있음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폭력문제는 개인적이거나 단편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국가나 국제적인 모든 수준의 자원들을 확보하는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VIOLENCE AGAINST WOMEN IN THE FAMILY

Preamble

우리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은 남성의 지배를 통한 여성의 종속적 위치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남성의 특권은 가정에서 성별상의 계급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한다. 사실상 가정은 여성에 대한 압력이 가장 잘 드러나는 場이다.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이념적인 가치를 통해서 여성의 종속성과 남성의 특권이 제도화된다. 이러한 가치의 내부화가 남성지배와 여성종속체계를 지속시키는 성적 자기인식(Gender identity)을 정당화시킨다. 가부장제도의 영향은 이제 남성-여성 폭력에만 국한되는것이 아니고 여성과 여성의 관계에도 연루된다. 그러므로,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과 평가절하가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성이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다룰 때 사용한 전략들은 단기적이고 반동적인 경향이 있다. 근본원인을 캐내는 장기적인 전략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했었다. 이전과 현재 사용되는 중재작업을 미래를 향해 보다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한다는 시각으로 재검토하고 평가하는것이 중요하다.

Recommendations

Women's NGOs :

1.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문제로서가 아니라 사회문제의 시각에서로 취급되어야 한다. 여성은 여성폭력에 대해 사회가 책임감을 가질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시작하여야 한다.
2. 위기 중재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촉구하는 일을 하는 NGO들 간에 경험들을 나눌 공개토론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3. 서로 다른 조직들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일을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조치를 취한다.
4. 가정폭력을 하나의 범죄로 인식하며, 남성이나 여성 모두가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을 갖지 않도록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인다.
5. 여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권리에 대해 자각하도록 법률 알기 캠페인을 벌인다.
6. (여성에 대한)옹호활동과 로비를 할 수 있도록 정보와 기술제공을 통해 CEDAW를 강하게 해줄 뿐 아니라, CEDAW의 잠재력과 CEDAW하에 국가의 의무에 대한 여성들의 자각하도록 함으로써 CEDAW기구의 이행력을 강화한다.

Governmental level:

7. 정부로 하여금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책임적이 되도록 한다.
8. 여성과 여성단체들을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일에 간여토록 한다.
9. 모든 부문에 걸쳐 다각적인 수준의 훈련과 성에 대한 감수성 프로그램을 만든다.
10. Beijing에서 개최되는 제4차 회의를 위한 정부보고서에 여성에 대한 폭력 보고서를 포함시킨다. 이 보고서는 여성들과의 협력하에 쓰여져야 한다.
11. 폭력에서 살아남은 여성을 위한 서비스에 자원을 제공한다.
12.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국가적인 정치적 의제 속에 넣도록 한다.
13. CEDAW을 인정해주는 모든 정부조직에 의해 CEDAW의 수행조직을 강화한다. CEDAW에 동의하는 국내 법의 제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Asia태평양지역 국가들로 하여금 여성에 관한 Beijing회의를 인준하기 전에 CEDAW를 인정하도록 매우 강력하게 요구를 한다.
14.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여성폭력에 대한 자료모으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법강화와 범죄 재판분야에 민감하기 위한 훈련이 마련되어야 한다.
15. 차별적인 법률을 제거하기위해 법적인 개혁을 촉진시킨다. 재판과 법률 체계에 있어 성적요소를 살펴본다.

International level :

16.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다루는 국제적인 회의를 연다. 이 회의는 폭력을 규정하고, 폭력을 극복시키기 위한 법적, 경제적, 교육적 조치를 천명한다. 국가의 정당이 이 집회를 이끌어 가도록 한다.
17.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에 관한 보고를 하는 UN의 특별보고자는 광범위한 관계와 경험을 지닌 여성옹호 운동가여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킨다. 이 보고자는 모든 정부로부터 재정적, 사무적 지원을 제공받아야 한다.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례들을 수집하는 데는 정부의 전적인 협력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보고자에 의해 제안된 것들이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18.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는 인권 위원회에 항구적인 안건으로 자리잡아야 하며, 다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 1)UN의 모든 위원회 모임에 제출되는 모든 회원국의 사례보고서
 - 2)모든 위원회 모임에서 진전상황, 실행단계, 차질 등에 대한 보고서
 - 3)인정된 여성폭력에 대해 UN인권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져서 모든 UN회원국들에게 인정되고 채택될 주요선언서.
19. 가정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강조된 국제 가정의 해인 1994년 선언문을 재고한다.

General:

20. 단기적인 반동적 조치보다는 여성의 강화에 강조를 둔 장기적인 공동체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예방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21. 반동적이기 보다는 먼저 적극성을 띠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22. 여성폭력에 대한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타처리 프로그램을 만든다.
23. 아내강간을 여성폭력의 가장 긴급한 문제로 인식한다.
24. 인지된 성관념의 변화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교육용 교재에 대한 재평가를 한다.
25. 연구나 자료 수집은 여성운동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시켜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과정 자체가 단순한 자료수집만이 아니라 의식개발, 교육, 강화를 위한 수단에 보탬이 되는 것이다.
26. 여성폭력에 대한 언론 매체의 도식적이고 미묘한 묘사를 반대하는 강력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27. 생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치료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착수한다.

VIOLENCE AGAINST WOMEN IN THE COMMUNITY

4개의 발표가 있었는데 그것은, "매춘, 산아제한과 출산기능 복원권, 인신매매, 일상적 폭력"에 관한 것이었다. 이 모든 발표들은 한결같이 여성에 대한 혐존하는 폭력을 보다 큰 맥락과 과정에서 보고 있다.

Recommendations:

이 그룹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이고 특수한 사항들을 추천하였다.

General recommendations:

1. 나이로비 회의 이후 성과가 많았으며 그 성과들은 재검토되고, 유인물로 만들어져 전파되어야 한다.
2.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는 모든 국제적, 국가적 회합에서 필히 제기되어야 하며, 그것들을 통해 (어려움을 당한 여성들을) 구제하는 길을 마련하고 또한 우리가 믿을만한 정부나 국제기구가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를 세계적인 이슈로 삼도록 압력을 가하는 요소로 삼아야 한다.
3. 여성을 나약하게 만드는 구조적 조정에 관한 국제적 정책에 반대하여야 한다.

Special recommendations:

- 1부-미디아와 교육
- 2부-실천에 바탕을 둔 공동체
- 3부-매춘과 인신매매
- 4부-인구정책과 출산기능 복원권

1부/미디아와 교육

1. 이 그룹은 NGO와 방송매체가 이미 방송에서 알려지고, 민감하고도 의식을 불러 일으키는 여성문제들을 알리는 캠페인과 기존 가청능력을 증진시킬 것을 촉구 한다.
2. 정부와 방송매체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영속시키는 가부장적 상징이나 이미지들을 금하도록 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3. 여성단체나 조직들은 새로운 가치와 이미지들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드러난 삶속에서의 여성상을 재 창조할 목적으로 지역사회에 폭넓게 다가가기 위해 여성의 관장하에 매체작업 특히 라디오같은 매스컴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2부/지역사회차원의 행동

1. 지방단위의 시민위원회들이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법률의 감시와 적용을 확실시하도록 권장한다.
2. 지방의 정치대표들과 법률구성 기구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 지역사회에 책임적이어야 한다.
3. 지역사회에서의 여성민간기구들의 가동은 지역사회의 압력집단으로서 움직여져야 한다.
4. 모든 법률구성기구에 성에 관한 감수성 훈련규정 마련.
5.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염려되는 곳에 여성단체는 법률제정에 참여하거나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경찰서의 여성보호실을 위한 여성 사회사업단체 등.

3부/매춘과 인신매매

1. 우리는 1949년 회의의 수정을 위해 힘써야 한다. 그리고 성적 씨비스에 직면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의 전적인 실시를 확고히해야 한다.
2. 새로운 삶을 원하는 매춘여성들에게는 바느질과 같은 고답적인 것을 넘어서 대안이 될만한 생계나 수입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3. "매춘을 통한 착취와 노예거래를 금하는 회의"나 CEDAW는 주도면밀하게 지켜보아야 하며 아울러 법률은 강화되어야 한다. 인신을 거래하는 것에 대한 통제는 강화되어야 하며 희생된 여성들은 구출되고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4. 켄스산업은 모조리 파헤쳐져야 하며 상담이나 위기에 처한 사람을 위한 봉사체제가 갖춰져야 한다.
5. 매춘여성들의 권리가 조직화되어야 하며 매춘에 가담된 여성들이 범죄시되기보다는 이용자들이 처벌을 받게 되어야 한다.
6. 법률집행 관리들을 위한 '성에 대한 감수성 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7. 여성은 노예나 매춘, 장기이식(혹은 대리모) 등과 같은 목적으로 거래하는 구조는 주목해 보아야 한다.

4부/인구정책과 출산기능 복원권

우리가 정부에게 촉구하는 것은,

- 여성의 고유한 지식, 전통적인 건강과 피임방안들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
 - 침략적이고 고도의 기술로 통제되는 피임방법들의 폐쇄적 도모를 중지할 것
- 대신에, 사용자의 직접 통제를 강조하며 정보의 확산에 바탕을 둔, 보다 광범위하게 안전하고 적합한 피임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VIOLENCE AGAINST WOMEN IN WAR AND INTERNAL CONFLICT

A. Refugee and Displaced Women

1. 난민의 처지에 관한 1951년 회의에서 내려진 "난민"과 "자국에서 쫓겨난 사람들"에 관한 범주의 정의와 1967년의 의정서를 다루는 일은 성을 현재 혹은 과거의 박해에 대한 주장의 바탕이 될 수도 있는 여러 근거중 하나로서 포함시키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2. 국가는 성에 바탕을 둔 박해를 난민이나 보호수용소 상태의 적절성을 수립하는 토대로 인식하여야 한다. 국가는 1991년 7월, Geneva에서 마련된 난민 여성의 보호에 대한 지침에서 UN의 난민 담당관이 제시한 사항들을 채택하고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실행장치는 이 지침을 따라 자리잡혀야 한다.
3. 정치적 폭력, 고문, 군인의 강간, 그로 인한 충격 등과 같은 갈등상황에 처해있는 여성들과 난민대우를 받기 위해 성적 폭행 앞에 굴복해야만 하는 여성들의 능력을 키워준다.
4. 성 분석 프로그램은 UN 인권위원회의 여러기구, 조직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여러 멤버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5. 국가들로 하여금 외국인에 대한 혐오감이나 종교적 편견에 물들지 않은 난민들을 다루는 정책이나 실행기구들을 구상하도록 촉구한다.
6. UNCHR은 "위험에 처한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실행에 우선순위를 두어 위험에 처한 여성의 문제를 인식하고 극도의 박해상황으로부터 그들이 옮겨져야 한다는 것을 확고히 하여야 한다.
7. 난민과 함께 일하는 NGO는 위험에 처한 여성을 확인하고 이 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러한 여성들을 UNCHR에 위탁하는 것을 책임적으로 해야 한다.
8. 난민 캠프에서 살고있는 여성의 건강, 안전, 작업과 교육은 배려와 확인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또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건강관리와 육체적, 성적학대로부터 해방될 권리를 포함되어야 한다.
9. 1993년 10월, UNCHR의 실행위원회가 성폭력에 대해 결의한 것을 예의 주시하는 바, 그것은 군인과 법집행관리들, 그리고 난민의 지위 특히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을 건의하는 것이다. 또한 그 결의는 난민 여성의 보호에 대한 지침의 확산과 여성의 난민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의 증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B. War crimes

우리는 다음사항을 건의한다.

1.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자의 기소및 형벌을 보장하기 위해서 UN에 의해 국제범죄재판소가 설치되어야 한다.
2. UN과 다른 정부간 기구들은 국내외 전쟁범죄에 대한 설득력 있고 적절한 보상책을 수립토록 정부기관들을 유도해야 한다. 이런 지침에는 적정수준의 보상은 물론 전시 여성희생자의 심리적, 정서적, 건강상의 필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포함되어야 한다.
3. UN은 1994년에 개최될 '개발과정에 있어서의 여성'에 관한 제2차 아시아 태평양 각료회의와 1995년에 열릴 제4차 세계 여성대회에서 대 여성 범죄를 다루어야 한다.
4. NGO는 일본 정부에 요청한다.
 - 대 전쟁 여성범죄의 희생자, 특히 위안부들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하라.
 - 대 여성 전쟁범죄, 특히 위안부에 대한 범죄고발을 위한 충분한 조사를 수행하라.
 - 위안부 생존자들을 위한 보상을 포함하는 대 여성범죄에 대한 적절하고 긴급한 법적 책임을 져라.
5. NGO는 카쉬미르와 방글라데শ의 여성들에 대한 인권유린 상태를 조사팀을 운영하도록 UN 인권위원회에 요구한다.
6. 모든 NGO는 각 정부에 대해 전쟁상황에서의 여성에 대해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부도덕한 공격이나 강간, 강제매춘을 전쟁범죄로 규정토록 전범 처리법(WAR CRIMES ACT)을 채택하도록 촉구한다.
7. 국내외의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여성인권유린에 대해 모든 NGO나 정부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통신망이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
8. 문제제기자(원고)가 속해 있는 각 정부들은 희생자와 단체 대표들을 지원해야 한다. 그것이 국내이든 국외이든 그들의 제소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C. Pornography

- 모든 음화의 본질적 요소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음화는 성적 폭력을 조장하며 여성을 비인간화 시키고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보는 가부장적 개념을 강화해준다.
- 음화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선전도구로서 갈등지역에서 사용된다.
1. 우리는 UN이 음화를 여성에 대한 차별의 한 형태로 인식해줄 것을 CEDAW를 통하여 요청한다.
 2.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의 정부들과 NGO가 음화가 여성에 대한 범죄임을 적절한 입법을 통하여 인식해줄 것을 요청한다.
 3. 우리는 NGO가 여성에 대한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각국의 정부에 설득활동을 벌일 것을 요구한다.

VIOLENCE AGAINST WOMEN AS HUMAN RIGHTS VIOLATIONS

UN Conventions and Declarations

1. 모든 UN기구는 각기의 회의 의제와 보고서에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금번 심포지움은 물론 JAKARTA와 BEIJING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는 실천 계획을 알려야 한다.
2. 여성의 권리는 모든 갈등상황에 적용되는 국제인도주의적인 법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인간자유지수(Human Freedem Index)에 관한 순위는 모든 국가를 위해 마련되고 발표되어야 한다.
4. UN, 각 정부 그리고 여성 NGO는 인권에 대한 비엔나선언에 명시된 여성인권 관련 조항들과 여성에 대한 폭력 제거에 대한 선언을 각기의 언어로 해석, 널리 알려야 한다.
5. 인권에 대한 비엔나 선언은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주시되어야 한다.
 - a. 지체없는 정부 비준
 - b. 특별 보고자의 임명
 - c. 의정서에 NGO의 보고가 가능하도록
 - d. 여성 폭력에 대한 초안 약정의 가동
6. NGO는 조약비준에 반하는 국내법을 개정토록 정부에 압력을 가한다.(CEDAW)
7. NGO는 여성폭력이 내포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제거에 대한 UN 조약 비준을 위해, 또한 문화적 이유로 인한 유보를 제거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8. CEDAW는 NGO의 보고서를 받아들여야 한다.

NGOs

9. NGO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특별 보고자의 임명을 포함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제거를 명시하는 UN의 위임과 선언문, 약정사항의 차수에 대한 보고문서들을 살펴야 한다.
10. 지역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생존자를 위하는 역할을 하는 여성 NGO의 명부가 발간되어야 한다.
11. 인권 단체들은 토의된 내용들과 금번의 '심포지움'에서 얻어진 각지역 NGO의 실천계획을 널리 알려야 한다.
12. 이 '심포지움'의 참가자는 심포지움 보고서를 비롯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UN 회의, 인권을 위한 비엔나 선언을 이 심포지움에 참석하지 못한 남녀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 포럼이나 다양한 방송매체를 통해 제시하여야 한다.
13. NGO는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에 관한 협정과 선언문이 성공적으로 채택되도록 UN과 정부에 압력을 가할수 있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연결망을 갖추어야 한다.
14. NGO는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군대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여야 한다.

Education

15. 인권교육은 일반여성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과 언어로 이루어져야 한다.
16. 여성폭력에 대한 문제는 학교교과서에 주요문제로 되어져야 한다.
17. UN과 여러기구는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여성폭력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8. 교과서나 방송매체에 묘사된 자녀(특히 소년들) 양육법, 교육내용과 가치체계 등은 남자아이들이 여성을 존경 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져야 한다.

Other human rights issues

19. 정부는 폭력에 대해 책임적으로 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다루는 입법을 차수 안하거나 태만하는 것도 역시 정부의 책임 위반임을 알아야 한다.
20. 성기훼손, 여자 영아살해와 같이 많은 여성/소녀에게 영향을 끼치는 관습은 드러내져서 계속 비난받아야 하며

공표되어야 한다.

21. 많은 여성들이 그들이 lesbian이기 때문에 폭력을 당하므로 lesbian의 권리도 여성의 권리로 인식되어야 한다.

22. 여성폭력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여성들이 금번과 같은 모임이나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어 다른 참가자들이 그들로부터 배울수 있게 한다.

가족

박종희

대한어머니회 서울시연합회회장

주제

- A. 가족과 평화
- B. 가족내에서의 여성의 역할
- C. 여성중심의 가족
- D. 가족, 민주주의 그리고 가족의 권리

WORKSHOP COORDINATOR

- BAHA'I International Committee
- World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 Women's Federation for Peace in Asia
- Asia-Pacific Woman in Law and Development

이번 Workshop은 BAHA'I International Committee, 세계 YMCA, 아시아평화여성동맹 그리고 APWLD로부터의 토론주제발표와 관심있는 단체의 참여자들의 그룹토의를 거쳐 4개단체의 관점만이 아닌 전체적인 입장에 서의 권고사항을 얻었다.

'가족'의 개념은 현재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으로 가족은 문화적 보수주의, 근본주의, 유물주의의 경제사회구조적인 재조성과 성과 정신의 혼돈하에서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는 가족이란 개념을 재숙고할 것을 요구한다.

파연 가족이란 무엇인가?

이번 워크샵은 가족의 정의를 기준에 있는 개념을 확인하기보다는 여러측면의 가족개념을 '제외' 시키는 것보다는 좀 더 '광역화' 시키는 것에 동의하였다.

우리는 아버지-어머니-자녀, 사회-경제-종교적-문화적-정치적 단위라는 표준모델, 규정화된 가족제도외에 상황 및 관계의 여러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워크샵은 다음과 같은 상황분석을 갖는다.

1. 독신여성 또는 편모-자발적으로는 타의적인 미망인, 이혼녀, 버림을 받은사람 또는 독신으로 인함.
2. 여성중심의 가족-전통, 관습 또는 환경에 의함
3. 확대가족
4. 개인의 선호와 공통분모를 갖고 모인 동성연애자, sex worker 또는 이주자, 그들대로의 그룹, 부모역할등 그룹/지역사회 생활

우리는 이러한 변이를 인식하고 가족의 정의는 제외적인 것보다는 좀 더 포함적이고 광역화시키는 데 동의한다.

세계가족의 해

세계가족의 해에 관하여 우리는 정부 특히 민간단체는 세계가족의 해를 "가족"의 모범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서 이용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이어 세계가족의 해를 기념하고 주장할 수 있는 두가지의 가능한 전략을 제시한다.